#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

| 의안 번호 | 2162 |
|---|---|

제출년월일 : 2011. 9.9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☐ 제안이유

○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(2010. 9. 1)으로 법령과 조례 간 내용 불부합 부분의 조문을 개정하고

○ 평생학습관 건립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조례 중「평생학습센터」를 「평생학습관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,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에 대한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## ☐ 주요내용

가.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「교육청」의 명칭을 「교육지원청」으로 변경 (안 제5조, 안 제20조)

나. 평생학습관 건립에 따른『평생학습센터』명칭을『평생학습관』으로 명칭 변경 (안 제6조, 안 제9조, 안 제10조, 안 제11조)

다. 평생학습관 운영 위탁기관『비영리 법인 및 단체』를 『비영리 법인』으로 변경 (안 제11조)

라. 평생학습관 시설사용과 수강료, 사용료 징수 및 반환, 면제규정 신설(안 제12조, 안 제13조, 안 제14조, 안 제15조, 안 제16조, 안 제17조)

마. 부대시설 운영등에 필요한 자원봉사 활용 (안 제19조)

바. 착오 기재된 조례 정비 (안 제20조)

## ☐ 개정조례안 : 붙임

## ☐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

지식정보사업소 평생교육과 이선직 2011-09-06 11:56

☐ **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**

○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(지역교육청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)

○ 평생교육법 제21조(시·군·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·운영 등)

○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(학습비의 반환 등)

☐ **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**

☐ **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**

☐ **사전예고결과 : 의견없음**

○ 입법예고 : 2011. 8. 4. ~ 8.24.(20일간)

☐ **기타 참고사항 : 붙임**

○ 현행조례(전문)



지식정보사업소 평생교육과 이선직 2011-09-06 11:56

#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"정의는" 을 "뜻은"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나목 중 "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" 을 "평생직업 교육을 하는" 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"시민들이" 를 "시민이" 로 한다.

제5조제3항 중 "교육청" 을 "교육지원청" 으로, "담당국장" 을 "담당국(소)장"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통할" 을 "총괄" 로 한다.

제6조제2호 중 "평생학습센터" 를 "평생학습관" 으로 한다.

제7조제4항 중 "대하여는 「안산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" 를 "대해서는 「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" 로 한다.

제9조 제목 "평생학습센터의 설치" 를 "평생학습관의 설치" 로, "안산시 평생학습센터(이하 "센터" 라 한다)를" 을 "안산시 평생학습관(이하 "평생학습관" 이라 한다)을" 로 한다.

제10조 제목 중 "센터" 를 "평생학습관" 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센터는" 을 "평생학습관은" 으로 한다.

제11조 제목 중 "센터" 를 "평생학습관"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센터는" 을 "평생학습관은" 으로, "평생교육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등에 센터의" 를 "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" 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센터" 를 "평생학습관" 으로 한다.

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20조 및 제21조로 하고 제12조부터 제19조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시설의 사용허가)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도 또한 같다.



지식정보사업소 평생교육과 이선직 2011-09-06 11:56

제13조(사용제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

1.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2.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
4. 그 밖에 평생학습관 시설 운영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

제14조(사용허가의 취소 등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제한,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.

1.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
2.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
3.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5조(수강료의 징수 등)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.

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, 시장이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평생학습관 시설물을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여 할 수 있으며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.

④ 수강료 및 사용료는 별표1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.

제16조(수강료등의 반환) ① 수강료와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한다.

1. 평생학습관의 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 정지된 경우
2. 평생학습관의 설치·운영자가 교습할 수 없게 된 경우
3.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

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별 반환기준은 별표2와 같다.

제17조(수강료등의 면제) ① 수강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 할 수 있다.



지식정보사업소 평생교육과 이선직 2011-09-06 11:56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2. 「장애인 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
4.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 가족
5. 「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
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 행사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8조(수료자에 대한 예우) 시장은 평생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, 수강생으로 타의 모범이 되거나 자치활동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.

제19조(실비지급)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·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원봉사자의 실비지급에 관하여는 「안산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」 제18조를 준용한다.

제20조(종전의 제12조) 중 "제12조"를 "제10조"로 하고, "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한다.

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 부칙

**제1조**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**(다른 조례의 개정) 안산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호 중 "평생학습센터"를 "평생학습관"으로 한다.



지식정보사업소 평생교육과 이선직 2011-09-06 11:56

| 소관 실·과 | | 평생교육과 |
|---|---|---|
| 입<br>안<br>자 | 실·과장<br>직위·성명 | 평생교육과장<br>김 남 림 |
| | 계장·팀장<br>직위·성명 | 평생학습계장<br>이 강 혁 |
| | 담 당 자<br>성명·전화 | 이 선 직<br>(행정 3449) |



지식정보사업소 평생교육과 이선직 2011-09-06 11:56

[별표1]

# 수강료 및 사용료(제15조관련)

## 1. 교육 수강료 (1인 1월 기준)

| 구 분 | 시 간 | 금 액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
| 매월 | 10시간이하 프로그램 | 10,000원 | · 교재비 및 재료비는 본인부담 |
| | 20시간이하 프로그램 | 20,000원 | |
| | 30시간이하 프로그램 | 30,000원 | |
| | 30시간초과 프로그램 | 40,000원 | |

## 2. 시설 사용료

| 대여시설 | 사 용 료 | 비 고 |
|---|---|---|
| 대 강 당 | 30,000원 | · 1회 2시간 기준<br>· 기준시간 초과시 매시간당 50% 가산<br>·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및 야간의 요액은 기준액의 20% 가산 |
| 다목적실 | 20,000원 | |

## 3. 냉·난방 사용료

| 구 분 | 기 준 | 요 액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
| 대 강 당 | 1회 | 30,000원 | · 1회 2시간 기준<br>· 기준시간 초과시 매시간당 50% 가산 |
| 다목적실 | 1회 | 20,000원 | |

## 4. 음향기기 사용료

| 구 분 | 기 준 | 요 액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
| 음향기기 사용 | 1회 | 20,000원 | · 1회 2시간 기준<br>· 기준시간 초과시 매시간당 50% 가산<br>· 마이크 유선 2대 기본<br>· (무선 마이크 추가시 10,000원) |



지식정보사업소 평생교육과 이선직 2011-09-06 11:56

[별표2]

# 수강료 반환기준(제16조관련)

<table>
<tr><th colspan="2">구 분</th><th>발생일</th><th>반환 금액</th></tr>
<tr><td colspan="2">1호, 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인 경우</td><td>강의를 할 수 없거나,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</td><td>납부 수강료의 일할 계산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3호에 의한 반환 사유에 따른 경우</td><td rowspan="3">가. 수강료 납부한 기간<br>이 1개월 이내인 경우</td><td>개강 시작 전</td><td>납부 된 수강료 전액</td></tr>
<tr><td>강의기간 1/3이 지나기 전</td><td>납부 된 수강료의 2/3</td></tr>
<tr><td>강의기간 1/2 이 경과 전</td><td>납부 된 수강료의 1/2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나. 수강료 납부한 기간 이 1개월 초과 하는 경우</td><td>강의 기간 1/2이 경과 후</td><td>반환하지 않음</td></tr>
<tr><td>개강 전</td><td>수강료 전액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개강 후</td><td>해당 월은 일할 계산액과 잔여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비 고</td><td colspan="2">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</td></tr>
</table>



지식정보사업소 평생교육과 이선직 2011-09-06 11:56

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br>1. (생략)<br>2. (생략)<br>가. (생략)<br>나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<br>다. (생략) | 제2조(정의) ····· 뜻은·· ·····.<br>1. (생략)<br>2. (생략)<br>가. (생략)<br>나.·····<br>····· 평생직업교육을 하는 학원<br>다. (생략) |
| 제3조(시장의 임무) ① (생략)<br>② 시장은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익히는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개발 추진한다.<br>③ (생략) | 제3조(시장의 임무) ① (현행과 같음)<br>② ····· 시민이 ·····<br>·····.<br>③ (현행과 같음) |
| 제5조(평생교육협의회) ① ~ ② (생략)<br>③ 위원은 시와 교육청의 평생교육 담당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, 시의회의원, 평생교육관련 기관·단체의 장,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br>④ (생략)<br>⑤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하고,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<br>⑥ ~ ⑦ (생략) | 제5조(평생교육협의회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br>③ ·····교육지원청·····담당국(소)장·····<br>·····.<br>④ (현행과 같음)<br>⑤·····<br>·····총괄··,·····<br>·····.<br>⑥ ~ ⑦ (현행과 같음) |
| 제6조(협의회의 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br>1. (생략)<br>2.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<br>3. (생략) | 제6조(협의회의 기능) ·····<br>·····.<br>1. (현행과 같음)<br>2. 평생학습관 ·····<br>3. (현행과 같음) |



지식정보사업소 평생교육과 이선직 2011-09-06 11:56

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7조(회의 등) ① ~ ③ (생략)<br>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「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 제7조(회의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br>④ ····· 대해서는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·····. |
| 제9조(평생학습센터의 설치) 시민이 필요로 하는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안산시 평생학습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 | 제9조(평생학습관의 설치)·····안산시 평생학습관(이하 "평생학습관"이라 한다)을·····. |
| 제10조(센터의 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br>1. ~ 6. (생략) | 제10조(평생학습관····) 평생학습관은·····.<br>1. ~ 6. (현행과 같음) |
| 제11조(센터의 운영)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,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센터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<br>② 센터에는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직원을 둔다. | 제11조(평생학습관····) ① 평생학습관은·····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·····<br>② 평생학습관·····. |
| 〈신 설〉 | 제12조(시설의 사용허가)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 한 때도 또한 같다. |
| 〈신 설〉 | 제13조(사용제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 |



지식정보사업소 평생교육과 이선직 2011-09-06 11:56

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〈신 설〉 | 1.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<br>2.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<br>3.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<br>4. 그 밖에 평생학습관 시설 운영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|
| 〈신 설〉 | 제14조(사용허가의 취소 등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제한,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.<br>1.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<br>2.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<br>3.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<br>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|
| 〈신 설〉 | 제15조(수강료의 징수 등)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.<br>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, 시장이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다.<br>③ 시장은 평생학습관 시설물을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여 할 수 있으며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.<br>④ 수강료 및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. |



지식정보사업소 평생교육과 이선직 2011-09-06 11:56

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<신 설> | 제16조(수강료등의 반환) ① 수강료와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한다.<br>1. 평생학습관의 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 정지된 경우<br>2. 평생학습관의 설치·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<br>3.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<br>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별 반환기준은 별표2와 같다. |
| <신 설> | 제17조(수강료등의 면제) ① 수강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 할 수 있다.<br>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<br>2. 「장애인 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<br>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<br>4.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 가족<br>5. 「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<br>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<br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<br>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<br>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 행사<br>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|



지식정보사업소 평생교육과 이선직 2011-09-06 11:56

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〈신 설〉 | 제18조(수료자에 대한 예우) 시장은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, 수강생으로 타의 모범이 되거나 자치활동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. |
| 〈신 설〉 | 제19조(실비지급)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·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원봉사자의 실비지급에 관하여는 「안산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」 제18조를 준용한다. |
| 제12조(공동추진 등) 시장은 제12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| 제20조(……) ……제10조……교육지원청……. |
| 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| 제21조(……) ……. |



지식정보사업소 평생교육과 이선직 2011-09-06 11:56

# 신·구조문대비표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〈신 설〉</td><td>[별표 1]<br>수강료(제15조관련)<br>○ 교육 수강료 (1인 1월 기준)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시 간</th><th>금 액</th><th>비 고</th></tr>
<tr><td rowspan="4">매 월</td><td>10시간이하 프로그램</td><td>10,000원</td><td rowspan="4">· 교재비및 재료비는 본인부담</td></tr>
<tr><td>20시간이하 프로그램</td><td>20,000원</td></tr>
<tr><td>30시간이하 프로그램</td><td>30,000원</td></tr>
<tr><td>40시간초과 프로그램</td><td>40,000원</td></tr>
</table>
○ 시설사용료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사용료</th><th>비 고</th></tr>
<tr><td>대 강 당</td><td>30,000원</td><td rowspan="2">· 1회 2시간 기준<br>· 기준시간 초과시 매시간당 50%가산<br>·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및 야간의 요액은 기준액의 20% 가산</td></tr>
<tr><td>다목적실</td><td>20,000원</td></tr>
</table>
○ 냉·난방 사용료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기준</th><th>사용료</th><th>비 고</th></tr>
<tr><td>대 강 당</td><td>1회</td><td>30,000원</td><td>· 1회 2시간 기준</td></tr>
<tr><td>다목적실</td><td>1회</td><td>20,000원</td><td>· 기준시간 초과시 매시간당 50%가산</td></tr>
</table>
○ 음향기기 사용료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기준</th><th>사용료</th><th>비 고</th></tr>
<tr><td>음향기기</td><td>1회</td><td>20,000원</td><td>· 1회 2시간 기준<br>· 기준시간 초과시 매시간당 50% 가산<br>· 마이크 유선2대 기본<br>(무선마이크 추가시 10,000원)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〈신 설〉</td><td>[별표 2]<br>수강료 반환기준(제16조관련)
<table>
<tr><th colspan="2">구 분</th><th>발생일</th><th>반환 금액</th></tr>
<tr><td colspan="2">1호,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인 경우</td><td>강의를 할 수 없거나,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</td><td>납부 수강료의 일할 계산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3호에 의한 반환 사유에 따른 경우</td><td rowspan="4">가. 수강료 납부한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</td><td>개강 시작 전</td><td>납부 된 수강료 전액</td></tr>
<tr><td>강의기간 1/3 이 지나기 전</td><td>납부 된 수강료의 2/3</td></tr>
<tr><td>강의기간 1/2 이 경과 전</td><td>납부 된 수강료의 1/2</td></tr>
<tr><td>강의 기간 1/2이 경과 후</td><td>반환하지 않음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나. 수강료 납부한 기간이 1개월 초과 하는 경우</td><td>개강 전</td><td>수강료 전액</td></tr>
<tr><td>개강 후</td><td>해당 월은 일할 계산액과 잔여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비 고</td><td colspan="2">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/table>



지식정보사업소 평생교육과 이선직 2011-09-06 11:56

# 안산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| 의안 번호 | 2162 |
|---|---|

제안년월일 : 2011. 9. 23.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장.

## □ 수정이유

○ 「별표 2」의 수강료 반환기준에서 반환금액의 산정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일관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반환금액 산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함.

## □ 주요골자

○ 「별표 2」 수강료 반환기준에서 나. 수강료 납부한 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개강 후의 반환금액에서 "해당 월은 일할 계산액과"를 "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"로 수정한다.



의회사무국 정현석 2011-10-24 16:57

# 안산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**안산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**

「별표 2」 수강료 반환기준에서 3회에 의한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의 나. 수강료 납부한 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개강 후의 반환금액에서 "해당 월은 일할 계산액과"를 "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"로 한다.



의회사무국 정현석 2011-10-24 16:57

# 신·구조문대비표

## 원 안

[별표 2]

수강료 반환기준(제16조관련)

| 구 분 | | 발생일 | 반환 금액 |
|---|---|---|---|
| 1호, 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인 경우 | | 강의를 할 수 없거나,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| 납부 수강료의 일할 계산 |
| 3호에 의한 반환 사유에 따른 경우 | 가. 수강료 납부한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개강 시작 전 | 납부 된 수강료 전액 |
| | | 강의기간 1/3이 지나기 전 | 납부 된 수강료의 2/3 |
| | | 강의기간 1/2이 경과 전 | 납부 된 수강료의 1/2 |
| | | 강의 기간 1/2이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
| | 나. 수강료 납부한 기간이 1개월 초과 하는 경우 | 개강 전 | 수강료 전액 |
| | | 개강 후 | 해당 월은 일할 계산액과 잔여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| 비 고 | |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 |

## 수 정 안

[별표 2]

수강료 반환기준(제16조관련)

| 구 분 | | 발생일 | 반환 금액 |
|---|---|---|---|
| 1호, 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인 경우 | | 강의를 할 수 없거나,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| 납부 수강료의 일할 계산 |
| 3호에 의한 반환 사유에 따른 경우 | 가. 수강료 납부한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개강 시작 전 | 납부 된 수강료 전액 |
| | | 강의기간 1/3이 지나기 전 | 납부 된 수강료의 2/3 |
| | | 강의기간 1/2이 경과 전 | 납부 된 수강료의 1/2 |
| | | 강의 기간 1/2이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
| | 나. 수강료 납부한 기간이 1개월 초과 하는 경우 | 개강 전 | 수강료 전액 |
| | | 개강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잔여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| 비 고 | |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 |



의회사무국 정현석 2011-10-24 16:57